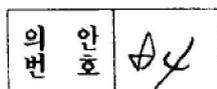


##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제출년월일 : 199 . .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 1. 제안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95. 2. 28, 대통령령 제14543호)으로 시교육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의 직급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포함(안제4조 제1항)
- 나.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포함(안제4조 제3항)

### 3.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95.2.28, 대통령령 제 14543호)

### 4. 참고사항

- 의사국 직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덧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 3항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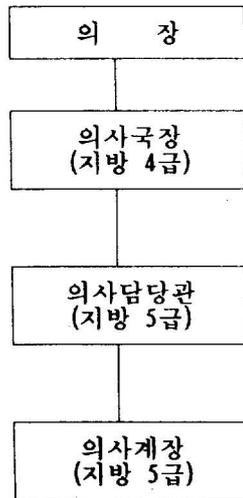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 (조직) ① 의사국에 국장을 두며 <u>지방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 4 조 (조직) ① ..... .... <u>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국에 의사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u>지방교육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③ ..... ... <u>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

###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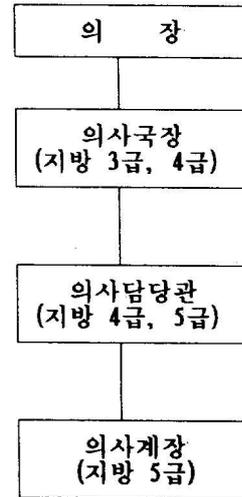
정수 : 13명



6급	2
7급	1
기능직(속기사)	1
기능직 (사무보조원)	4
기능직(운전원)	2

### 개 정 안

정수 : 13명



6급	2
7급	1
기능직(속기사)	1
기능직 (사무보조원)	4
기능직(운전원)	2

## 관 계 법 령 발 취

—

—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1991. 8. 16, 대통령령 제13451호)

- 7차 개정, 1995. 2. 28. 대통령령 제 14543호.

제14조(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4.1.17, '95.2.28)

제15조(기획감사담당관) ①기획감사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4.1.17, '95.2.28)

제16조(행정관리담당관) ①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4.1.17, '95.2.28 )

제20조(관리국)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4.1.17, '95.2.28)

大田廣域市 教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6年 1月 31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大田廣域市 教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6. 1. 31.  
文教社會 委員會

### I.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5年 12月 30日 大田廣域市 教育監
- 나. 回 附 日 字 : 1996年 1月 8日
- 다. 上 程 日 字 :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 4次 文教社會 委員會 ('96. 1. 31)  
上程, 審査, 議決

###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行政管理擔當官)

#### 1. 提 案 理 由

-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95. 2. 28. 대통령령 제14543호)으로 시교육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의 직급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가.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포함 (안 제4조 제1항)
- 나.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포함 (안 제4조 제3항)

##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 당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사국의 설치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2년 9월 17일 조례 제2245호로 제정 공포된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이 되겠음.
- . 또한,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199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4543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시  
교육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육위  
원회 의사국장 및 의사담당관의 직급도 이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사국 직원들의 사기양양책  
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파  
생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드린 각 시·도별 조례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시·도중 개정요인이 없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13개 시·도중 충청남도과 우리 대전광역시만이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충남의 경우에도 지난 1월 19일 임시회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우리 대전광역시만 의회의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임.
  
- . 지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1대의회에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1992년 7월 23일 제12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대전 학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시와 1993년 12월 20일 제28회 정기회 및 1994년 5월 20일 제32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 당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시의회에서 의결한 후 공포 시행되었으나 몇달이 지난 후 교육부장관의 정원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될 뻔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의 설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때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절차를 필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견해이기는 하나 이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이 시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위원회의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며 그 조직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사국의 설치등)의 위임에 의하여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으며

- . 만약, 동 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교육부의 정원승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또다시 지난 '92년과 '93년의 경우처럼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위상이 추락되었을 때에는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총 연대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진정한 교육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 이는, 타 시·도의 경우와도 비교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당초에 동조례의 재정논의자체가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IV. 計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VII. 其 他 必 要 的 事 項 : 없 음